



제목

민원을 읽지도 않고 이관시켜버리는 소극행정 신고합니다.

내용

귀 문체부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해당 부처 공무원이 현재 민원에 적힌 사항을 읽지도 않고 강제로 이관시켜 이렇게 다시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 1[REDACTED]에 분명히 게임위로 이관시키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위로 이관시켜 해당 민원인은 공무원이 복지부동하였다고 판단, 이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민원을 접수합니다.

또한, 이런 소극행정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책을 함께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Screenshot_20221025-102118_Chrome.jpg 

Screenshot_20221025-110130_KakaoTalk.jpg





답변 내용

답변일

2022-10-26 09:59:54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블루 아카이브' 게임물 등급 상향과 관련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소극행정 불만'으로 이해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다수 민원이 최근 발생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접수 및 처리 중이며, 향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원 폭증에 따라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제안해 주신 내용을 고려하여 성실히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 한편, 별도 요청하신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유한 자료가 아니므로,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 신청 내용



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오프라인 민원 미접수 및 거부 관련 소극행정 신고
내용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맞이방 등 민원신고를 하려고 하나 민원접수 인원도 없고 오히려 민원인을 형법으로 처벌하겠다고 민원접수 자체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첨부 파일	1.jpg  2.jpg 
피민원인명	김규철
피민원인 근무처명	게임물관리위원회
피민원인 주소	
피민원인 연락처	



답변 내용

답변일

2022-10-24 10:06:4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블루 아카이브' 게임물 등급 상향과 관련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소극행정 불만'으로 이해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다수 민원이 최근 발생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접수 및 처리 중이며, 향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원 폭증에 따라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성실히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4.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청이 필요하신 경우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해당 기관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완료상세

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비정상적인 회의록 공개거부에 관한 민원

내용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건수와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한 사유를 기록한 표입니다.

해당 자료를 확인하시면 대부분의 사유를 정보공개법 9조 5항의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래 9조 5항의 내용입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의 사례가 5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민원인은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의 비공개 업무가 국민 대부분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정보공개를 거부하는게 올바른 국가기관의 자세입니까?

그리고 내부 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청구가 타 기관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국민들의 논란이 된다면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직무수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야 합니다.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가 정상적이라면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 해당 기관에서 오히려 정보공개를 거부하는건, 해당 기관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산하기관의 회의록, 심의처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발생 원인 및 해결방안, 차후 재발방지대책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민원들이 대부분 처리 연장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니 해당 행동은 국감 일정만 지나는데 기다리는 회피성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원들을 처리 연장하는게 아닌,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빠른 민원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첨부1.png 



답변일

2022-10-28 20:33:3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상향결정 관련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이해됩니다.
3. 등급상향결정과 관련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우리 부에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직접 제공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필요하신 경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게임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5)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완료상세



제목

근무중 민원인에게 위협을 받는 근무처에 대한 제보

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헌데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진 못할 망정 근무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부수고 던지며 실질적 위협을 가한 민원인이 출몰하여 민원실이 폐쇄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도 모자라 기재부의 인원감축 권고까지 더해져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정도라는 이야기가 해당 근무지의 직원의 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악성 민원인의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과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봐야하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해당 근무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중복 민원 접수 자체 요청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다수 민원인들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를 이해하였음을 알리고, 본 민원 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당 안내문을 게시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민원인들께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 안내문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취지와는 다르게 중복·반복성 민원 접수 자체를 요청드린다는 표현이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드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4. 특정 게임물에 대한 다수 민원이 최근 발생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접수 및 처리 중이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내의 게시만으로 민원 처리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소극행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 미온적 감사에 대한 소극행정

내용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행정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이하 '게관위' 에서 크립토재킹 사건이 발발했다는 사실을 한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첨부한 기사에 따르면 게관위의 부장급 직원이 이를 행했으나, 해당 기관은 감사를 2달간 끌며 국회의원실의 자료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크립토재킹이란 타인의 장치를 무단탈취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범법행위를 의미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 피해로 말미암아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횡령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더해 이번 사건의 경우 그 장치가 공용물이었으며, 가상화폐 채굴은 장치의 그래픽카드에 심각한 손상을 불러오기에 공용물의 파괴로도 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당 기관은 자신들이 받은 피해를 감안해서라도 감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나 오히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크립토재킹이 모두 해당 기관의 방관 하에 진행됐을지도 모른다고 국민이 의심케 만듭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행동을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첨부 파일

게관위의 크립토재킹 사건.PNG 

2022-10-27 17:24:5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민원대응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무실 등 보안이 필요한 공간의 출입구에 출입제한 안내문을 부착해 오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민원실을 현장민원 접수 감소 등의 사유에 따라 '맞이방'으로 바꾸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20.11.~).
4. 맞이방은 업무시간(09:00~18:00)에 방문 민원인의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5)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3-01-27 17:24:50

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 의원 선정에 대한 소극행정

내용 현재 한국 게임 시장의 규모는 20조에 육박합니다. PC, 콘솔, 모바일을 망라하며 게임업계도 몸집이 커졌고, 성인 중 게임 이용자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게임은 본래도 벌어들이는 수익만 보면 변방의 산업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더더욱 무시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 시장의 운명에 큰 획을 그을 권한이 있는 게임물 관리 위원회, 해당 위원회의 자격에 이의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바다 이야기 사건 당시 해당 사태와 같은 일을 막는 긍정적인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해당 위원회가 게임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을 무시하며 편파적으로 행동하는 등 직무에 태만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작금의 사태를 기점으로 관련 소극행정도 많이 들어왔구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직무에 태만해서 그 자격에 이의가 제기 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위원회가 이렇게 신뢰를 잃게 된 이유에는 위원 및 직원을 뽑는 것에 있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봅니다.

위원 소개를 확인해보시면,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분들은 위원회장님을 제외하면 게임에 대한 경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니터링단 채용공고도 확인해보시면 게임에 대한 식견은 기본적인 자격 조건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당 조건은 우대 조건으로 넘어가있죠.

게임이용자의 고객으로써의 인식 강화, 게임회사의 유저간 소통 강화 등 게임 시장이 성숙해져가는 과정 속에, 해당 위원회는 바다이야기 당시의 모습으로 정체되어있어선 안됩니다. 이분들도 역시 각성하여 인원을 고용함에 있어 게임, 게임 시장, 게임 커뮤니티 및 이용자에 대한 이해도를 우선시 할 줄 아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스스로 쇄신하려는 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무소 PC로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기에 이를 직무태만으로 보는 것입니다.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시대에 발맞춰 게임에 정통한 인원, 특히 위원을 추가적으로 뽑아야 스스로 제시한 전략목표인 '공정, 투명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 행복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구성원 및 국민 소통과 참여를 통해 혁신기반 건강한 게임환경 조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일

2022-10-24 10:06:4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블루 아카이브' 게임물 등급 상향과 관련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소극행정 불만'으로 이해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다수 민원이 최근 발생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접수 및 처리 중이며, 향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원 폭증에 따라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성실히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4.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청이 필요하신 경우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해당 기관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5)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3-01-24 10:06:42

첨부 파일

제목

이번 국감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발언에 관한 청원

내용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민원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번 국감에서의 발언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전문가가 아닌데 게임물 등급심의한다고 그런데 게임이라는게 꼭 뭐 게임을 그 개발해보고 그 저처럼 2~30년 하는 것만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기때문에' 라는 발언은 무슨 생각으로 하신 말씀인지 민원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게임정도는 아무나 데려다놔도 전문가라는 내용인가요?

진짜 심각하게 불쾌합니다. 저런 사람이 위원장이라고 있는건지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있던 일중에 간호조무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를 오래하면 간호사로 인정해달라고 그런데 그 사항은 기각되었습니다 오래하더라도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오래했는데도 그랬는데 오래하지 않아도 관련업계인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라니 무슨 말을 한건지 민원인은 이해를 못하겠고 화가납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상향 심의 적정성에 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3.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등급상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해당 게임물들은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5.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6조 제7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을 두고 있고, 이외 위원 결격사유에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7조의2



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위원장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내용 2022.10.13 금일 국정 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인 게임을 관리위원회는 게임을 모르더라도 전문가라 할수 있다고 발언하였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말하는 게임이라는 현대 문화를 관리할수 있는 전문가는 대체 어떠한 조건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하며, 어떠한 능력이 검증되었기에 전문가로 인정받아서 게임 전체를 검열하는 위치에 오를수 있었는지와 세운 실적들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해당 문화에 관하여 접해본적 없는 자가 해당 문화의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그 전문가에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하고 왜 해당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를 해당 문화를 검열하는 위치에 앉도록 방치해두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답변 내용

답변일 2022-10-27 14:15:34

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을 등급상향 심의 적정성에 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등급상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해당 게임물에 대해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6조 제7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을 두고 있고, 이외 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7조의2 및 위원회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등급분류 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5)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직원 교육 부재 의혹에 관하여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원이 민원인과의 통화중 동해는 일본해라고 부르는게 당연하다는 녹취록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일본해라고 표기된 나라가 더 많은게 사실이나 해당 건에 관하여 나라에서는 일본해라고 표기한 나라들에게 동해로 표기해달라고 수정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공무원이 아니라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일본해라고 부르는 것은 애국심의 부재이며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원 교육 부재 의혹을 일으키며, 공공기관에서 일하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직업의식의 부족하다고 여길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향한 언행도 민원인을 깔보고 가르치려드는 언행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태도는 귀 기관의 산하기관 관리 소홀과 교육 메뉴얼의 부재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게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민원 상담원들에게 어떤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에서 직원들의 교육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와 관리하고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기에 저러한 발언이 나오도록 방치한것인지를 설명 해주셨으면 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6d34d7a4527a69ac98d47cefebb1ca44a572ae266d352e4ee7d3904bfde7469f.jpg

답변 내용

답변일	2022-10-27 14:15:3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상향 심의 적정성에 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3.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등급상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해당 게임물에 대해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5.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6조 제7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을 두고 있고, 이외 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7조의2 및 위원회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등급분류 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5)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문화체육관광부의 민원 접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처리기간 연장 조치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현재 민원 접수와 동시에 내용을 확인조차하지 않고 접수후 모든 민원에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라는 메크로성 문구를 붙여넣고 바로 처리기간 연장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많이 몰려서 처리가 따라가지 못하여 어쩔수 없이 처리기간을 연장할수는 있습니다만 접수와 동시에 매크로 문구와 함께 처리기간의 연장부터 시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민원 처리 의지의 부재가 의심되며 국민들을 무시하고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2-10-26 20:24:0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민원처리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됩니다. 3. 최근 다수 민원이 발생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접수 및 처리 중이며 향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폭증에 따라 취지와는 다르게 중복·반복성 민원 접수 자제를 요청드린다는 표현이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드리게 되는 등 업무처리 과정 중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민원응대 시 통일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게임위에 요청하겠습니다. 4. 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무실 등 보안이 필요한 공간의 출입구에 출입제한 안내문을 부착해 오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민원실을 현장민원 접수 감소 등의 사유에 따라 ‘맞이방’으로 바꾸어 운영해 오고 있으며(‘20.11.~), 1층 맞이방은 업무시간(09:00~18:00)에 방문 민원인의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처리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소극행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한편, 민원 폭증에 따라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제안해 주신 내용을 고려하여 성실히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5)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넥슨게임즈社 "블루 아카이브" 의 통보 건의 정보공개 청구 요청합니다.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10.05 넥슨게임즈의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등급상향을 권고한 것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이 수 천 여건 쌓였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열람 및 판단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 중복된 내용이라 취급하는 '적당 편의'의 행정실수를 저질렀으며 탁상행정(민원에 대한 불만)과 업무해태(민원 자제 권고)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이를 소극행정이라 판단하겠습니다.

관 중심의 행정방식 또한 의심되니 철저히 확인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는 플레이스토어(구글코리아 LLC. 운영), 앱스토어(애플코리아 LLC. 운영),원스토어(원스토어 LLC. 운영)플랫폼을 통해 넥슨게임즈社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블루 아카이브" 에 대해 22.9월 경 등급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임은 게임 내에서 고등학생으로 소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모습 및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게임은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이에 대한 표현은 선정적이지 않으며, 게임상 내용과 포함된 이미지에서 직접적인 나체 표현, 도촬, 유사성행위 혹은 성행위 등의 선정적 연출과 이에 대한 직접적 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게임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에 의거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에 의거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기준은 다음 항목과 같습니다.

가. 성기 등이 완전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경우

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은 이유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경우

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



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

가 항의 경우 선정성에 관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정성 측면에서 청소년 이용불가의 등급분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영화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신체 노출 및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뿐만 아니라 그 영상의 구성 및 음향의 전달방식, 영화주제와의 관련성, 영화 전체에서 성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영화의 예술적·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에는 성행위에 대한 묘사와 '다 항'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게임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등장 캐릭터들의 신체 노출 및 성적 표현이 작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으며 등장하는 신체 노출 및 성적 표현이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볼 때 과도하거나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에는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 역시 해당 게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에는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게임에서 근친상간과 혼음에 대한 묘사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항과 아 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게임은 캐릭터의 행위 하나하나를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없으며 캐릭터들을 간접적으로 지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사 항과 아 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게임은 캐릭터의 행위 하나하나를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없으며 캐릭터들을 간접적으로 지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위의 사유로 인해 "블루 아카이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콘텐츠와는 거리가 멀기에 본 민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급분류 규정 2절 제8조에 의거된 선정성 기준 청소년이용불가등급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등급상향 통보는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는 플레이스토어(구글코리아 LLC. 운영), 앱스토어(애플코리아 LLC. 운영),원스토어(원스토어 LLC. 운영)플랫폼을 통해 넥슨게임즈社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블루 아카이브"에 대해 22.9月 경 등급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본 민원인은 넥슨게임즈社에게 충분한 '자료제출' '사전조사' '서면조사' 및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에 대한 소명기회가 주어졌는지 의문을 갖게 되어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취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취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 등 각종 기록을 전산처리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
3.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자는 열람 및 복사의 목적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회의록 공개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④ 기타 회의록 공개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게임물 관리규정위원회 제15조 1항 및 3항에 의거"
하여

1.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 전산기록(회의록 등)중 넥슨게임즈社
의'자료제출'사전조사'서면조사' 및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
술' 여부

1-2.넥슨게임즈社의'자료제출'사전조사'서면조사' 및 '시정조
치안에 대한 의견진술' 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상세한 전산기
록(회의록 등)을 요청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분들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제의 기관이 이미 소극행정으로 일관한 탓에 달리 민원 신청
할 곳이 없어서 국민신문고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게임물 관리 위원회' 의 졸속 행정,
소극 행정, 편파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상위 기관인 문화
체육관광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회의록 등 각종 전산 기록과
처리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이전 답변 보기



답변일

2022-10-27 16:13:42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재분류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을 두고 있고, 이외 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등급분류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우리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브르 아카이브’와 ‘페이트 그랜드 오더’는 캐리커이 이사.

4. ‘블루 아카이브’와 ‘페이트 그랜드 오더’는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았을 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직권등급재분류 조치대상임을 통지하였으며, 사업자측에서 게임위가 통지한 이용 등급에 대해 수용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5. 다만, 등급재분류 조치와 관련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직접 제공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필요하신 경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044-203-2445)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재분류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콘텐츠산업과에 연락(044-203-2445)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재분류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을 두고 있고, 이외 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등급분류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우리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블루 아카이브’와 ‘페이트 그랜드 오더’는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았을 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

원회의 독립적인 등급분류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우리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블루 아카이브’와 ‘페이트 그랜드 오더’는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았을 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직권등급재분류 조치대상임을 통지하였으며, 사업자측에서 게임위가 통지한 이용 등급에 대해 수용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5. 다만, 등급재분류 조치와 관련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직접 제공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필요하신 경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044-203-2445)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만족도 결과



국민신문고

+

←

↺

https://www.epeople.go.kr/nep/utilHistory/mySmgPttn/mySmgPttnDetail.paid

A

☆

☆

👤

...

민원 신청 내용

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3조 (등급분류 원칙) 위반 관련 건에 관한 민원

내용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민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계관위)의 등급분류 규정 위반에 대한 민원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3조 (등급분류 원칙)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등급분류의 원칙)

① 등급분류는 국제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등급분류는 사회통념을 존중하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등급분류는 게임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등급분류는 최소한의 규제 및 보충적 규제를 지향하여야 한다.

⑥ 등급분류는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⑦ 등급분류 시 신청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현재 계관위는 등급분류 규정 3조를 위반하거나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한국 게임을 발전에 큰 장애가 되 국민경제에 심각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 3조 1항에 따르면 '등급분류는 국제적 보편 가치를 지향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첨부파일1'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게임을 등급분류가 얼마나 국제적 보편 가치와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 3조 2항에 따르면 '등급분류는 사회적 통념을 존중하며, 시대에 부합하여야한다.'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관위는 모바일 게임을 재택 모니터링단을 채용하여 사회적 통념과 시대상을 등급분류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부파일2'를 보시면 채용자격 필수요건이 상당히 편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경력단절 여성 및 장애인,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와 일부 지방 거주자만 모니터링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성차별적인 조건이며 지역 차별적인 조건입니다. 본 민원은 이런 조건으로는 사회적 통념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신문고

+

←

↺

https://www.epeople.go.kr/nep/utilHistory/mySmgPttn/mySmgPttnDetail.paid

A

☆

☆

👤

...

제 3조 4항에 따르면 '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관위는 한정된 인력을 핑계로 게임사에 자체등급 분류를 위임하고 신고받거나 의뢰받은 게임을 한정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부파일2'에서 보드시피 모니터링단의 편향된 시각으로는 등급분류의 형평성이 제대로 지켜지기 중 대명백하게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3조 6항에 따르면 '등급분류는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민원이 작성된 계기가 된 게임물 등급분류 번호 ONES-SM-211108-0001 이하 "블루아카이브"의 등급상향은 매우 단편적인 맥락과 상황을 근거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관위와 전화통화를 통해 올해 초부터 '블루아카이브'에 대한 민원이 3~4건 있었고 8월즈음 수영복 이즈미라는 캐릭터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등급 상향하기로 하였다는 정황을 입수하였습니다. 이는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대명백하게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본 민원은 문체부가 계관위의 등급분류 회의록을 참고하여 등급분류 규정 제 3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계관위의 등급분류 통보와 권고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더하여,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국민의 알 권리 행사에 "민원 자제 요청"이라는 갑질로 응수하여 국민의 권리를 중대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는 관계로, 해당 민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리하여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b53d6310a2aa2dbe894a08ac45b0f7a48ffc0b218ce87da5373462b89fc31c80.png

0fd85c35e9051f5f561fca857d78883efa357ebebe8bb4fcd0439f6c2fee6c0d.png

국민신문고

+

←

↺

https://www.epeople.go.kr/nep/utilHistory/mySmgPttn/mySmgPttnDetail.paid

A

☆

☆

👤

...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2-10-27 13:54:3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블루 아카이브 등급재분류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됩니다.

3. '블루 아카이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등급상향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해당 게임물은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았을 때 게임위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직권등급재분류 조치대상임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게임위가 통지한 이용 등급에 대해 수용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5. 등급재분류 조치와 관련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직접 제공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필요하신 경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044-203-2445)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

만족도 완료상세

국민신문고

+

←

↺

🔒

https://www.epeople.go.kr/nep/utilHistory/mySmgPttn/mySmgPttnDetail.paid

🔊

☆

☆

👤

...

민원 신청 내용

↑

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비정상적인 회의록 공개거부에 관한 민원

내용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민신문고

+

←

↺

🔒

https://www.epeople.go.kr/nep/utilHistory/mySmgPttn/mySmgPttnDetail.paid

🔊

☆

☆

👤

...

내용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건수와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한 사유를 기록한 표입니다.

해당 자료를 확인하시면 대부분의 사유를 정보공개법 9조 5항의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을 이유로 거부하고있습니다. 아래 9조 5항의 내용입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의 사례가 5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민원인은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의 비공개 업무가 국민 대부분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정보공개를 거부하는게 올바른 국가기관의 자세입니까?

그리고 내부 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청구가 타 기관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국민들의 논란이 된다면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직무수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야 합니다.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가 정상적이라면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없었을것이고, 해당 기관에서 오히려 정보공개를 거부하는건, 해당 기관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산하기관의 회의록, 심의처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발생 원인 및 해결방안, 차후 재발방지대책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민원들이 대부분 처리 연장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니 해당 행동은 국감 일정만 지나는걸 기다리는 회피성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원들을 처리 연장하는게 아닌,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빠른 민원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

←

↺

🔒

https://www.epeople.go.kr/nep/utilHistory/mySmgPttn/mySmgPttnDetail.paid

🔊

☆

☆

👤

...

답변 내용

답변일

2022-10-26 09:59:5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블루 아카이브' 게임물 등급 상향과 관련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소극행정 불만'으로 이해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다수 민원이 최근 발생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접수 및 처리 중이며, 향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원 폭증에 따라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제안해 주신 내용을 고려하여 성실히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 한편, 별도 요청하신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유한 자료가 아니므로,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5)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 만족도 완료상세

국민신문고

× +

← ↻ <https://www.epeople.go.kr/nep/utilHistory/mySmgPttn/mySmgPttnDetail.paid> A ☆ ⋮

민원 신청 내용

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횡령 의심정황 제보

내용

이번에 민원을 넣게 된 이유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예산 활용이 수상하며, 횡령이 의심되어 제보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예산은 5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결산은 2억대인 상황이 2019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2019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자체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게임물 모니터링단이 출범한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예산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고, 귀 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민원이라는 방식으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 +

← ↻ <https://www.epeople.go.kr/nep/utilHistory/mySmgPttn/mySmgPttnDetail.paid> A ☆ ⋮

답변 내용

답변일

2022-10-25 17:33:16

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소홀에 관한 문제 제기"로 이해됩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의 가상자산 채굴에 대해서는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관련자 조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징계처분이 확정될 시에는 향후 경영공시(알리오) 징계처분 결과에 반영되어 공시될 예정입니다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부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044-203-2445)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nep/utilHistory/mySmgPttN/mySmgPttNDetail.paid

민원 신청 내용

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민원담당업무인원의 부적절한 행동 관련 민원

내용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민원담당업무인원의 부적절한 행동 관련 민원

귀 기관의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기원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캡처한 내용입니다.

해당 글로 보았을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민원담당업무인원 중 특정 집단을 옹호하며 다른 민원을 임의로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특정 집단을 옹호 및 다른 민원을 임의로 처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지 조사 후 결과 및 해당 결과가 나오게 된 증거, 그리고 해당 인원이 실제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징계처리 등의 정보공개 및 감사를 요청합니다.

해당 인원으로 인하여 수많은 민원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처리를 요구합니다.

또한 민원신청에 대한 자체라는 명목하에 민원 응대에 대한 비협조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이관 없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 후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기피를 함께 신청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기원합니다.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nep/utilHistory/mySmgPttN/mySmgPttNDetail.paid

답변 내용

답변일

2022-10-26 20:24:0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민원처리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됩니다.

3. 최근 다수 민원이 발생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접수 및 처리 중이며 향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폭증에 따라 취지와는 다르게 중복·반복성 민원 접수 자제를 요청드린다는 표현이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드리게 되는 등 업무처리 과정 중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민원응대 시 통일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게임위에 요청하겠습니다.

4. 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무실 등 보안이 필요한 공간의 출입구에 출입제한 안내문을 부착해 오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민원실을 현장민원 접수 감소 등의 사유에 따라 '맞이방'으로 바꾸어 운영해 오고 있으며('20.11.~), 1층 맞이방은 업무시간(09:00~18:00)에 방문 민원인의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처리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소극행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한편, 민원 폭증에 따라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제안해 주신 내용을 고려하여 성실히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5)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말장난으로 민원인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관한 소극행정 민원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명정대한 민원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 중 하나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통보”, “권고”, “직권 재분류” 등, 온갖 용어를 써가며 민원인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겁니까? 이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 민원인은 생각합니다.

본 민원인은 자체등급 분류 게임물 등급분류 번호 ONES-SM-211108-0001 이하 “블루아카이브” 등급분류일자 2021-11-08에 분류된 게임의 이용등급을 재조정 해야 한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의견에 이의가 있어 과거 민원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같은 게임을 하는 지인들에게 물었는데, 지인들이 이용등급을 바꾸는 게 통보인지 직권 재분류인지 아니면 권고인지 지인들이 각자 다른 답을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러한 민원 처리가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상의 민원에 대해서 “통보”니 “권고”니 “직권 재분류”니 말장난이나 하면서 민원 답변할때는 통보가 아니고 권고다, 혹은 직권 재분류다. 권고가 아니라 직권 재분류, 혹은 권고다, 직권 재분류가 아니라 통보, 혹은 권고다 하면서 편의주의적으로 입맛에 맞게 대답하려고 하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파일



답변 내용

답변일

2022-10-25 20:48:26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블루 아카이브 게임 등급조정 관련 적정성 문의'로 이해됩니다.
3. '블루 아카이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등급상향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해당 게임물은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았을 때 게임위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어 사업자에게 직권등급 재분류 조치대상임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게임 위가 통지한 이용 등급에 대해 수용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원회 의결 및 사업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등급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5.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6조 제7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을 두고 있고, 이외 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7조의2 및 위원회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등급분류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우리 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 [redacted] 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3-01-25 20:48:26

첨부 파일

하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공개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원칙에 우선하는 내부적 규정이 존재하는지?

둘. 만약 하나. 가 사실이라면 해당 내규에 따라 "블루아카이브"와 "페이트 그랜드 오더" 의 등급상향권고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셋. 만약 하나. 가 사실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하위부서들은 본래 이러한 비밀적 내규규정이 일상화 되어 있으며, 공개된 규정들은 휴지조각에 불과한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은?

넷. 만약 하나. 가 사실이고 둘. 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규정이라는 특성 상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 이외의 답변을 바람.

다섯. 만약 하나. 가 사실이 아니라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명확하게 앞에서 언급한 등급분류 규정 제3조 1항을 무시하는 것을 인정하는지?

여섯. 만약 다섯. 이 사실이라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국제적 가치란 대한민국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가 아니라 중국, 북한 등의 '독재 및 공산주의에 따른 국민 검열 및 통제' 인지?

일곱. 적어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현 행정에 한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국제적 가치는 미국, 유럽보다는 중국, 북한 등을 추종하는 독재 옹호 및 옹공주의자들의 가치로 보이는데, 혹시 이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여덟. 만일 다섯. 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규정을 무시해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규정 제3조 1항을 준수하려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과 방안을 행할 것인지?

2022-10-25 15:44:17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등급 상향 권고 취소요청 및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3.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4.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6조 제7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을 두고 있고, 이외 위원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위원회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등급분류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우리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다음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회의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3을 근거로 위임규정인「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제15조 및 「회의록 작성 공개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루 아카이브'와 '페이트 그랜드 오더'는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았을 때 게임위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직권등급재분류 조치대상임을 통지하였으며, 사업자측에서 게임위가 통지한 이용 등급에 대해 수용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7. 다만, 등급상향결정과 관련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직접 제공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필요하신 경우,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을 통해 게임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8.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 02-12-12345678 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잘못된 게임물 등급 분류에 관한 민원
내용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민원의 목적은 문화체육관광부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소극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에 있습니다. 본 민원인은 최근 게임물 이용등급 조정에 대해 이의가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제출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공포를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이번 분류에 대한 조치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해당 내용과 저의 생각을 아래 내용으로 적습니다. 제 8조(선정성 기준) 3. 15세이용가: 선정적 내용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이번에 재조정 및 직권 재분류에 들어가는 게임들은 이 항목에서 선정적인 내용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제한적으로(사람의 형상을 띤 존재들이 성적인 부위를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가나다라마바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서술하겠습니다. 3-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만 표현됨) 4-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이번 논란에 관련된 게임들의 경우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으나 최소한의 가릴 수 있는 수영복 등을 입거나 옷을 입고있으며 가슴, 둔부 등의 신체 부위가 전체가 나오지 않고 부분적으로 표현됩니다.

3-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

4-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4-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

나 항목 또한 마찬가지로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으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하지 않고 '이대로 문어에게 먹힐 바에는 차라리 그 전에 내가 먼저 먹어버리면 될지도-?!'라는 식으로 그냥 문어가 달라 붙어서 위험하니 문어를 먹어서 해결하겠다 라는식으로 적혀있는데 어느 부분이 성행위를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행위에대한 기준도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형태의 성교'가 성행위라고 정해져있지, 전단계인 포옹, 키스, 애무 등은 제외라고 적혀있습니다.

해당 문어의 경우도 문어가 삽입한거도 아니고 붙어있는건데 최악의경우에도 포옹, 애무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게관위의 규율중 제 3조(등급분류의 원칙)의 ⑥ 등급 분류는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에 해당하며 게관위 규율에 위반되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4-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4-라의 항목과 대조 할 수 있는 15세 이용가의 항목이 없으므로 따로 적지만 이에 해당하는 내용 자체가 해당 게임들에는 없습니다.

3-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4-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

해당 게임들에는 성차별, 성폭력, 성매매 요소 자체가 없습니다.

3-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4-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마찬가지로 해당 게임들에는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마.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4-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4-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 항목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의사로 인해 캐릭터가 성적인 표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의사로 할 수 있는거라곤 캐릭터의 물음에 대한 대사 누르기 말고 없습니다.

여기까지 선정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적었으나 모든 항목이 15세 이용가에 대한 항목으로 생각됩니다.

아래로는 폭력성, 혐오감, 공포감에 대한 내용을 적겠습니다.

제 9조(폭력성 및 공포 기준)

3. 15세이용가: 폭력적이거나 혐오감에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사실적으로 표현된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폭력적이거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하게 표현된 경우

해당 게임들은 총기, 도검류, 활, 창 등의 무기를 가지곤 있으나, 과도하게 표현하여 해당 무기가 직접적으로 신체에 닿거나 하여 피가 나오는 연출은 나오지 않고 행해진 결과가 사실적으로 표현되기만합니다.

이에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각 항목들의 세부내용인 가나다라마바로 생각을 적겠습니다.

3-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사실적으로 표현된 경우

4-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하게 표현된 경우

이 항목에 들어맞는다고 해봤자 위에 말씀드린 무기류들을 가지고있고 어느정도의 선혈이 묻어 있는경우도 있다 정도지

이게 신체에 닿아서 지나가면서 나오는 선혈의 표현등으로 과도하게 표현되어 있진 않습니다.

3-나.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4-나. 무기류 표현에 제한이 없는 경우

나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무기류 표현은 사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 무기들의 실제 사용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3-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다하지 않는경우

4-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와, '사실적으로 묘사된'으로 4-다 항목 안에 3-다 항목이 포함되게되므로 해석을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있으며 과다한 경우'로 해석하겠습니다.

피가 튀는 등의 장면들이 묘사된 것은 사실이나 과다하게 피로 덮여져있지는 않습니다.

피가 튀는 등의 장면들이 묘사된 것은 사실이나 과다하게 피로 덮여져있지는 않습니다.

3-라. 신체훼손에 대한 묘사가 경미한 경우

4-라. 신체훼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이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체훼손에대한 묘사가 '총에 맞았다' 라는 식으로 표현되지 사실적으로 서술하거나 묘사된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3-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4-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있는 경우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은 제가 알기론 없으며 음향효과로 총소리나 도검류의 부딪히는 소리 등은 있으나 과도하지 않게 중간중간 효과음으로 나오는 정도입니다.

3-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약탈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되, 이에 대한 제어장치(안전지역, 공격자에 대한 벌칙 등)가 있는 경우

4-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하는 게임들은 페이트 그랜드오더의 경우에는 사용자간의 대결부터가 없으며, 있는 다른 게임들의 경우에도 약탈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격에 대한 제어장치도 하루 공격 가능횟수가 정해져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보아도 폭력성에 관련한 내용들은 15세 이용가 안에서 가능한 내용들로만 이루어져있지 청소년이용불가에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아래로는 약물에 관한 내용이지만 묘사된거라곤 주사기 등의 정도로 매우 건전한 의료적 조치정도입니다.

제 10조(범죄 및 약물 기준)

3. 15세이용가: 범죄 및 약물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범죄 및 약물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약물의 묘사 또한 묘사된다하더라도 그림으로 표현되는건 주사기 정도이며 이 주사기 또한 직접적으로 신체에 접촉되는것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외에는 오직 텍스트로만 표시됩니다. 이것이 직접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11조(언어 기준)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저속어, 비속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저속어 혹은 비속어가 있으며 그 표현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속어 혹은 비속어가 없는 게임들도 있고 있으나 표현의 정도가 심하다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12조(사행행위 등 모사 기준)

3. 15세이용가: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성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성 유발의 정도가 청소년에게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경우또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사행성 우려가 있고 주된 이용자가성인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성 유발 정도라 해봤자 어떤 게임은 그저 4장의 카드중 고르며 4장 다 고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나머지 게임들의경우 사행행위라 할 수 있는게 이러한 카드 고르기 이하입니다.

카드라고해서 사행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제비뽑기라고 무방하며 제비뽑기가 사행행위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초등교사들은 제비뽑기를 했다간 학부모분들로부터의 비난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2절 등급분류 세부기준을 보았을때 해당 게임들이 각 기준의 세부 항목들을 어긴 경우는 없습니다.

허나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그저 담당자가 소극행정을하였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을정도로 규정에 맞지 않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해당 판단을 내리고 각 게임들에 재조정 및 직권 재분류에 들어가게 한 담당자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민원을 적습니다.

솔직히 이번 등급 재분류에대하여 보고 각 세부 기준들을 보았을때 본 민원인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본인들의 최소 단체의 규율부터 지켜지지 않는데 어찌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들을 참고하여 현재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게임들의 구제와 담당자의 교육 및 징계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첨부파일로 제가 본 규정집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글을 잘 쓰는 편은 아니라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pdf



성행위 기준.jpg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10-0325180

접수일

2022-10-11 11:17:04

담당자(연락처)

[REDACTED]

처리예정일

2022-11-17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일 2022-10-27 17:52:0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블루 아카이브’게임 등급상향 심의 적정성에 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3. ‘블루 아카이브’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등급상향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해당 게임물은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았을 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직권등급재분류 조치대상임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통지한 이용 등급에 대해 수용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5.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6조 제7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을 두고 있고, 이외 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7조의2 및 위원회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등급분류 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REDACTED]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가 2023-01-27 17:52:09

능일자

첨부 파일



만족도 평가하기

신청 정보



민원 신청 내용



제목

소극행정 신고

내용

민원을 넣고 답변을 받았는데 매크로가 의심 됩니다.

첨부 파일

피민원인명

피민원인 근무처명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직권재분류팀)

피민원인 주소

피민원인 연락처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관리팀)



답변일

2022-10-25 10:11:33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중복민원 자제 요청 공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다수 민원인들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를 이해하였음을 알리고, 본 민원 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당 팝업공지와 안내문을 게시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민원인들께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 안내문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취지와는 다르게 중복·반복성 민원 접수 자제를 요청드린다는 표현이 민원인께 불편함을 드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4. 특정 게임물에 대한 다수 민원이 최근 발생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접수 및 처리 중이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내의 게시만으로 민원처리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소극행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보공개 요청이 필요하신 자료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사이트를 통해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044-203-2445)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완료상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시작에 앞서 위 민원의 첨부된 파일은 지난 2022년 8월 26~27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게임문화가족캠프의 홍보자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7월 1일 '게임은 문화다' 라는 말을 하였으며 9월에는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첨부파일과 문체부 장관의 말, 그리고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킴으로써 게임과 문화의 접목을 계속하여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감사에서 보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소속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문체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게임은 문화다' 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점으로 봤을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동은 충분히 문화검열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해 문체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는 대한민국 헌법 제 2장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현재 게관위의 태도는 대한민국 법중 가장 중요시 여겨야되는 헌법 제 2조를 무시하고 문화검열로 국민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대한 문체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당 산하기관의 문화검열 태도를 비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당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 재분류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게임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게임위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및 「게임위 규정」 제8조)을 두고 있고, 이외 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게임위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등급분류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우리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블루 아카이브’와 ‘페이트 그랜드 오더’는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았을 때 「게임위 등급분류 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직권등급재분류 조치대상임을 통지하였으며, 사업자측에서 게임위가 통지한 이용 등급에 대해 수용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044-203-2445)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편파성에 관하여
내용	귀 기관 산하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소극행정 행보에 대해 긴히 말씀드리고 싶은 바 있어 민원을 제출합니다. 본문을 제대로 안 읽고 건성으로 답변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6대 의무가 무엇입니까? 위의 대한 답변이 불가능할 경우 왜 안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틀 전 있었던 게임물 이용등급 조정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기관의 졸속 행정으로 답변을 얻을 수 없게 되어 본 기관에 민원을 드립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공포를 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과 해당 위원회의 분류 조치에 있어 불일치 하는 항목이 있어 해당 항목과 제 의견을 아래에 작성합니다. 제 8조(선정성 기준) 3. 15세이용가: 선정적 내용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이번에 재조정 및 직권 재분류에 들어가는 게임들은 이 항목에서 선정적인 내용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제한적으로(사람의 형상을 띤 존재들이 성적인 부위를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아래 추가적으로 남깁니다. 3-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만 표현됨) 4-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이번 논란에 관련된 게임들의 경우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으나 최소한의 가릴 수 있는 수영복 등을 입거나 옷을 입 고있으며 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전체가 나오지 않고 부분적으로 표현됩니다. 3-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 4-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4-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 나 항목 또한 마찬가지로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으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하지 않고 '이대로 문어에게 먹힐 바에는 차라리 그전에 내가 먼저 먹어버리면 될지도-?!'라는 식으로 그냥 문어가 달라 붙어서 위험하니 문어를 먹어서 해결하겠다 라는식으로 적혀있는데 어느 부분이 성행위를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해당 행위는 위원회의 규율 제 3조의 ⑥ 등급 분류는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를 정면 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사료됩니다. 4-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위의 항목과 대조 가능한 15세 이용가의 항목의 부재로 별개로 기술하나, 해당 사항에 부합할만한 내용 역시 해당 게임들에 부재합니다. 3-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3-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3-마.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4-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 4-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4-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4-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용자 임의로 선택지를 골라 성적인 결과를 도출시키는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게임들은 각 기준의 세부 항목을 위반한 사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는 기준을 입맛대로 참고해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단을 내리고 각 게임들에 재조정 및 직권 재분류에 들어가게 한 담당자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민원을 적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현재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게임들의 구제와 담당자의 교육 및 징계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첨부 파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pdf 

기피부서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접수일 2022-10-26 09:52:46

담당자(연락처)  (044-203-)

처리예정일 2022-11-1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2-10-26 09:54:17

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처리에 관한 문제 제기 및 등급상향결정과 관련된 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로 이해됩니다.
- ‘블루 아카이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게임산업법 제16조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등급상향 결정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해당 게임물은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았을 때 게임위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 직권등급재분류 조치대상임을 통지하였으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측에서 게임위가 통지한 이용 등급에 대해 수용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 ‘앙상블스타즈!!’ 게임물은 현재 위원회에서 모니터링 진행 중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게임물이 이용자에게 적절한 등급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등급상향결정과 관련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우리 부에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직접 제공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필요하신 경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게임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5)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제 민원이 원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다른 민원가 묶음처리 돼서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소극행정)

제가 넣은 민원의 요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에서 스팀 게임 및 패키지 게임 검열에 비일관적이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지 않은 편협한 시각으로 처리하는것에 분개하여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이와 관련된 게관위의 입장및 어째서 그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답을 듣고자 그리고 잘하면 문체부에서 게관위에대한 압박이 들어가지 않을까란 기대로 문체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제 민원에 단 한글자도 들어가지 않은 '귀하의 민원내용은 '블루 아카이브 게임 등급조정 관련 적정성 문의'로 이해됩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비단 블루아카이브 뿐만 아니라 게관위에서 하는 모든 검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고 그 예시로 해외에서 전체이용가를 받은 어린이용 게임인 니노쿠니 하얀 성회의 여왕이나 베요네타등 패키지 게임을 예시로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건 블루 아카이브라는 제 민원 내용에는 단 하나도 들어가있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식으로 묶음처리(혹은 매크로)형식의 민원을 받지 않기 위하여 중간에 간단한 질문 몇가지도 넣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 민원은 제목만 보고 블루 아카이브 등급 조정 관련 문의로 판단하여 다른 민원과 묶음처리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소극행정으로 신고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등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 따른 등급분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블루 아카이브' 등급상향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취소 요청"로 이해됩니다.
3. '블루 아카이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게임산업법 제16조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등급상향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해당 게임물은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았을 때 게임위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 직권등급재분류 조치대상임을 통지하였으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측에서 게임위가 통지한 이용 등급에 대해 수용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2.10.27.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6.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6조 제7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을 두고 있고, 이외 위원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위원회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등급분류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우리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044-203-2445)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토요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사유서 요구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게임물 관리 위원회(통칭 계관위) 의 업무추진비 활용 내역을 살펴본 바, 확인할 것이 있어 해당 청구를 올립니다. 현재 계관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2020년도 기준으로 1개의 이력이 확인됩니다. 2020-08-01 진로체험 및 등급분류 교육관련 사전보고 협의 조아씨 교육사업팀장 등 카드 2인 11,000 2020년도 8월 1일은 토요일, 즉 공공기관에서는 공휴일로 분류되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당한 사유서와 함께 품의를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지요. 2019년도에도 3번정도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날짜는 3. 23., 5. 11., 7. 27.일자 입니다. 2019-03-23 위원장 교육사업팀 행사 운영방향 등 논의 광운대역 파리바게트 교육사업팀장 외 카드 4명 21,900 2019-05-11 위원장 게임위-GCRB 업무현안 논의 가람돌솔밥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 외 카드 6명 136,000 2019-07-27 위원장 굿 게이머 페스티벌 개최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주)달 마산회원구청장 외 카드 6명 29,000 (표가 복사 붙이기가 안되어 보이기에 불편하시다면 제가 첨부한 파일의 빨간 글씨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세 요일 모두 토요일입니다. 굳이 논의를 다른 기관들은 모두 쉬는 토요일에 해야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7월 27일자에 표기된 구청장의 경우 구청도 토요일 휴무인것으로 압니다) 또 왜 그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했던 것인지 궁금해지더군요. 제가 요구하는것은 2가지입니다. 1. 해당 업추비를 사전에 사용하겠다고 계획했던 보고서, 혹은 해당 품의를 올려야하는 사유를 기록한 사유서가 있다면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2. 그리고 해당 논의 결과로 나온 약식 보고서나 논의 결과 이력이 있다면 그 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일

[REDACTED]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됩니다.
3.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사용처의 업종확인 결과 경양카츠 경양선술 센텀점은 '한식',나고미는 '일식회집'으로 확인되었고 각 사용처는 업무추진비 제한 장소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4. 아울러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업무협의 등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합니다. 본 기관이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위원회 '업무추진비 등 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기재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REDACTED])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REDACTED]

첨부 파일

해당 공공기관의 행정조사기본법 15조(중복조사의 제한) 위반관련 사항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해당 민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최근 등급변경에 따른 행정조사 및 조치가 행정조사 기본법 15조(중복조사의 제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작성된 민원입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발매/출시 당시 등급분류를 진행 및 검열을 진행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등급분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부1 파일을 확인하시면 해당 검열관련 일러스트들은 게임 초창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통과 했거나,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과거에 수정이 이미 진행된 상황입니다.

아래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미 행정조사를 실시한 후 재조사를 금지하는 행정조사기본법 1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등급분류라는 대민업무의 행정감시기관이 행정처리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조차 위반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재조사를 '등급재분류' 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에 자신들이 진행한 업무처리조차 뒤엎는 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위법행위를 규탄하며, 해당 행위에 대하여 감사 및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6조 제7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을 두고 있고, 이외 위원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위원회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등급분류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우리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5)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비정상적으로 비싼 심의비용에 반비례하는 등급심의과정에 관한 민원
귀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기원합니다.

첨부1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등급분류수수료의 내용입니다.

해당 등급분류표로 최근에 발매된 Call of Duty®: Modern Warfare® II 게임의 등급분류수수료를 계산하면
 $360,000 \times 1.5 \times 4 \times 1 = 2,160,000$ 이라는 공공기관 수수료라고 믿기지 않는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위에서 계산 예시로 든 게임의 경우 대형게임사에서 발매하는 게임이므로 해당 금액이 적게 보일수도 있으나,
인디게임같은 중소기업/개발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비싼 금액으로 등급분류심의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담
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싼 수수료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비싼 수수료를 받는만큼 제대로 된 등급분류를 진행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겁니다.

하지만 첨부2의 파일 내용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 심의 27건, 내용수정신고 반려 게임물 후
속조치 5건, 등급분류심의 38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4건, 내용수정신고 후 사후 승인보고 42건 총 226
건에 대한 회의를 단 2시간 10분만에 끝마쳐버리는 졸속회의/행정을 하고있었습니다.

한 건에 대략 34초 정도 걸린 셈이 되는데 과연 이게 216만원을 들여서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등급심의과정
입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졸속행정을 규탄하며 해당 공공기관 및 해당 기관에 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진행
되고 있는지 감시해야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콘텐츠산업과에 대하여 감사 및 행정조치를 요구합니다.

2022-11-10 18:22:5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소녀전선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조정 반대"로 이해됩니다.
3. 소녀전선은 게임위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직권재분류 대상통지한 게임물로 게임사(유통사)에서 콘텐츠를 수정하겠다고 밝혀와 수정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수정완료 회신이 오면 검토 후 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044-203-2445)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3-02-10 18:22:53

민원 신청 내용

제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산하기관의 운영 행태에 대한 의문점

내용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원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현황을 조사해본 후 의문이 들어 민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1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청구 비용입니다.

첨부파일2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22년 9월 1일자 회의록이라는 명목으로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민원인은 첨부파일1의 심의비를 청구해 놓고 723종의 게임물에 대한 검토를 단 1시간만에 완료하는 행보가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5초마다 1건씩 논의를 끝마친 것인데 이것이 말이 되는 해명인지는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44e3a0bcd5ccfb0fff3156d8afa0235c32a44e79566b6f1cf840cb4c50388fb6.png [↓](#)

'블루 아카이브' 게임물관리위원회 안건 및 회의록.pdf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10-0739333
접수일	2022-10-24 09:07:45
담당자(연락처)	██████████ (██████████)
처리에정일	2022-11-30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2-11-10 18:22:53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소녀전선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조정 반대"로 이해됩니다. 3. 소녀전선은 게임위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직권재분류 대상통지한 게임물로 게임사(유통사)에서 콘텐츠를 수정하겠다고 밝혀와 수정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수정완료 회신이 오면 검토 후 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3-02-10 18:22:53
첨부 파일	

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비정상적인 심의비용과 줄속으로 처리되는 등급심의과정에 관한 민원
내용	귀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기원합니다. 첨부1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등급분류수수료의 내용입니다. 해당 등급분류표로 최근에 발매된 Call of Duty®: Modern Warfare® II 게임의 등급분류수수료를 계산하면 $360,000 \times 1.5 \times 4 \times 1 = 2,160,000$ 이라는 공공기관 수수료라고 믿기지 않는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위에서 예시로 든 게임의 경우 대형게임사에서 발매하는 게임이므로 해당 금액이 적게 보일수도 있으나, 인디게임같은 중소기업/개발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비싼 금액으로 등급분류심의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일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미국, 캐나다의 게임 심의 기구인 ESRB의 경우, 심의비용은 해당 게임의 개발비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매겨질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자율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의를 받을 것을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러한 비싼 수수료를 받는만큼 제대로 된 등급분류를 진행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겁니다. 하지만 첨부2의 파일 내용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 심의 27건, 내용수정신고 반려 게임을 후속조치 5건, 등급분류심의 38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4건, 내용수정신고 후 사후 승인보고 42건 총 226건에 대한 회의를 단 2시간 10분만에 끝마쳐버리는 줄속회의/행정을 하고있었습니다. 한 건에 대략 34초 정도 걸린 셈이 되는데 과연 이게 216만원을 들여서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등급심의과정입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줄속행정을 규탄하며 해당 공공기관 및 해당 기관에 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해야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콘텐츠산업과에 대하여 감사 및 행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첨부 파일	첨1.png  첨부2.pdf 

처리기관 정보



답변 내용

답변일	2022-11-10 18:22:53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소녀전선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조정 반대"로 이해됩니다. 3. 소녀전선은 게임위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직권재분류 대상종지한 게임물로 게임사(유통사)에서 콘텐츠를 수정하겠다고 밝혀와 수정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수정완료 회신이 오면 검토 후 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정 기관의 지속적인 기만적 응답에 대해 보충설명과 재발 방지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약2주 이상의 기간 동안 귀 기관 산하 특정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이의대한 근거를 공개할 것을 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응답 중 하나로 첨부 1의 자료가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 1 의 회의록은 22. 9. 1.(목) 14시 00분부터 15시 00분의 회의에서 723종의 게임물을 검토하여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결정 116건, 직권등급재분류 결정 연기 1건, 등급 부적정 시정요청 결정 606건 을 결정하였다고 기록하여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서만 짧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본 민원인은 첨부 1 의 문서가 해당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공개할 것을 구하는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문체부의 의견은 어떨습니까? 아래 내용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민원내용	첨부2는 국가기록원에서 발행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서입니다. 첨부2의 90, 91페이지에서 회의록에 들어가야하는 내용, 회의록 양식의 예가 첨부되어있습니다.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블루 아카이브 등급재분류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됩니다.
3. '블루 아카이브'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등급상향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해당 게임물은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았을 때 게임위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직권등급재분류 조치대상임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게임위가 통지한 이용 등급에 대해 수용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2.10.27.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 등급재분류 조치와 관련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직접 제공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필요하신 경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044-203-2445)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의 법조문과 첨부 2 의 자료에 따라

첨부 1의 자료는 공공기관의 회의록이 갖추어야 할 양식과 내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고

공공기관의 문서 양식으로 부적절한 문서인 동시에

1시간의 회의에서 723종의 게임물을 검토하여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결정 116건, 직권등급재분류 결정 연기 1건, 등급 부적정 시정요청 결정 606건 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는 비현실적인 자료를 다수의 민원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한 것은 민원인을 기만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 민원인은 판단합니다.

귀 기관 산하 특정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이 법률과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 또한 민원인에 대한 기만적 응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40조에 따른 33조 규정의 수정 요구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와 게임물 등급 재분류 관련 행정제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넥슨게임즈'가 개발하고 '(주)넥스코리아'가 서비스하는 '블루 아카이브' 게임에 대하여 게관위에서 등급 재분류를 권고하였습니다. 등급 재분류 권고는 표면상으로는 권고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게임산업법 제21조제6항 및 제21조의8에 따라 게관위가 직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므로 게임사 측에서는 이러한 권고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권고 처분으로 인해 이미 15세 이용가로 제공되던 당해 게임이 어쩔 수 없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등급이 변경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게관위에서는 이전의 다른 유사 사례에서도 회의록 공개나 재분류 관련 처분의 사유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재분류 권고 또한 이전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게임 등급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될 경우,

(가) 미성년자인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며,

(나) 성인 소비자의 경우에도 (가)의 사유로 게임사 측의 수익성 악화
화로 인한 조기 서비스 종료 가능성 상승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 당해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바, 게임의 소
비자 또한 행정절차법 제2조의 당사자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
청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하는 당해 권고 처분은 게임 소비자, 즉
이해관계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우며,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해당
권고 사유 공개 및 이후 관련 사례의 정보공개청구 수용, 혹은 권고
처분의 취소 등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
랍니다.

2. 현행 게임산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게임의 소비자는 게임 등
급 재분류 관련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게
임 등급 재분류 관련 처분에 대해 일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하는 당해 권고 처분은 게임 소비자, 즉 이해관계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우며,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해당 권고 사유 공개 및 이후 관련 사례의 정보공개청구 수용, 혹은 권고 처분의 취소 등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현행 게임산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게임의 소비자는 게임 등급 재분류 관련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게임 등급 재분류 관련 처분에 대해 일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첨부파일1].jpg

[첨부파일2].jpg





답변일

2022-10-27 14:09:12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 위“)의 등급 재분류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게임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게임위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및 「게임위 규정」 제8조)을 두고 있고, 이외 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게임위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등급분류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우리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블루 아카이브’와 ‘페이트 그랜드 오더’는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았을 때 「게임위 등급분류 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직권 등급재분류 조치대상임을 통지하였으며, 사업자측에서 게임위가 통지한 이용 등급에 대해 수용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및 위원회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회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게임위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등급분류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우리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블루 아카이브’와 ‘페이트 그랜드 오더’는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았을 때 「게임위 등급분류 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직권 등급재분류 조치대상임을 통지하였으며, 사업자측에서 게임위가 통지한 이용 등급에 대해 수용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5. 다만, 등급재분류 조치와 관련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직접 제공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필요하신 경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게임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044-203-2445)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완료상세



민원 신청 내용



제목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검열시도 민원

내용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지난 2022년 8월 26~27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게임문화가족캠프의 홍보자료입니다.

귀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의 홍보자료처럼 게임과 문화의 접목을 계속하여 시도하고 있습니다.

허나, 최근 국회감사에서 보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은 문화다' 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점으로 봤을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동은 충분히 문화검열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헌법 제 2장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해당 산하기관의 문화검열 태도를 비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당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첨부 파일

49220fb874410d79af9859801e94d513e333569ded0597d7ee41b85bae66236d.jpg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10-0450793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 재분류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게임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게임위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및 「게임위 규정」 제8조)을 두고 있고, 이외 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게임위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등급분류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우리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블루 아카이브’와 ‘페이트 그랜드 오더’는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았을 때 「게임위 등급분류 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직권 등급재분류 조치대상임을 통지하였으며, 사업자측에서 게임위가 통지한 이용 등급에 대해 수용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044-203-2445)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게임물 관리 위원회의 이유없는 소극행정에 대해 신고합니다.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부서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가 민원을 제시한 이유는 게임물 관리 위원회의 소극 행정에 대한 민원입니다.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의 기타공공기관에 속합니다. 헌데 이러한 공공기관이 본인들의 업무 처리에 대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민원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첨부1, 첨부2 사진은 어제 22.10.06 13시 경 실제로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한 민원인이 찍은 게임물 관리 위원회의 민원인 방문거부에 대한 사진입니다. 하지만 첨부3 사진은 동일한 날짜인 22.10.06 10시 경 다른 민원인이 민원 제출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한 사진입니다. 이는 업무 과중을 핑계로 민원인의 정당한 민원 제출을 거부한 소극행정입니다.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낭설이 여럿 돌고있는데, 이 중 해당 직장의 소속인 혹은 퇴사자 등 관련인들만 글을 올릴 수 있는 블라인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인 인원이 적은 글이 있습니다. 첨부4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듯, 이 인원은 '민원실에 방문한 민원인이 난동을 부려 민원실이 폐쇄되고, 기획재정부의 권고로 민원실 담당인원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한가지 의문인 점은, 그렇다면 첨부 3의 정황이었던 22.10.06 10시경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방문 역시 불가능했어야 하는데, 이 민원인은 실제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실 폐쇄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실제로 그 법률적 근거를 집행한 사건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을 요구합니다. 추가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직도를 캡처한 첨부5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인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22.10.07 09:40 현재에도 https://www.grac.or.kr/Committee/Organization.aspx 해당 링크에 접속해 조직도의 위원장 항목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이유없이 민원인의 민원 제기를 막는 소극행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소극행정을 진행하는 것이 명명백백한 바,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 및 편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하급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진행할 계도 조치 및 그 계획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답변일

2022-10-24 10:06:4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블루 아카이브' 게임물 등급 상향과 관련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소극행정 불만'으로 이해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다수 민원이 최근 발생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접수 및 처리 중이며, 향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원 폭증에 따라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성실히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4.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청이 필요하신 경우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해당 기관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완료상세

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비정상적으로 비싼 심의비용에 반비례하는 등급심의과정에 관한 민원
내용	귀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기원합니다. 첨부1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등급분류수수료의 내용입니다. 해당 등급분류표로 최근에 발매된 Call of Duty®: Modern Warfare® II 게임의 등급분류수수료를 계산하면 360,000 X 1.5 X 4 X 1 = 2,160,000 이라는 공공기관 수수료라고 믿기지 않는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위에서 계산 예시로 든 게임의 경우 대형게임사에서 발매하는 게임이므로 해당 금액이 적게 보일 수도 있으나, 인디게임같은 중소기업/개발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비싼 금액으로 등급분류심의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싼 수수료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비싼 수수료를 받는만큼 제대로 된 등급분류를 진행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겁니다. 하지만 첨부2의 파일 내용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 심의 27건, 내용수정신고 반려 게임물 후속조치 5건, 등급분류심의 38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4건, 내용수정신고 후 사후 승인보고 42건 총 226건에 대한 회의를 단 2시간 10분만에 끝마쳐버리는 졸속회의/행정을 하고있었습니다. 한 건에 대략 34초 정도 걸린 셈이 되는데 과연 이게 216만원을 들어서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등급심의과정입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졸속행정을 규탄하며 해당 공공기관 및 해당 기관에 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해야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콘텐츠산업과에 대하여 감사 및 행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첨부 파일	첨부1.jpg  첨부2.pdf 
피민원인명	게임물관리위원회
피민원인 근무처명	게임물관리위원회
피민원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피민원인 연락처	051-720-6800

답변일

2022-11-10 18:22:53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소녀전선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조정 반대"로 이해됩니다.
3. 소녀전선은 게임위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직권재분류 대상통지한 게임물로 게임사(유통사)에서 콘텐츠를 수정하겠다고 밝혀와 수정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수정완료 회신이 오면 검토 후 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044-203-2445)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제목	현재 일부 게임물의 심의등급 상향에 강력반대합니다.
내용	겨울로의 환절기간 건강에 안녕하십니까. 민원 처리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해당 문화컨텐츠는 각 유통사에서 15세 미만 이용불가로 등록되어 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재심사 및 등급상향(청소년 이용불가) 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게임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에 의거, 등급분류규정 8조 4번 선정성으로 인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해당 게임의 재심사되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 되는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 본 민원인은 기존 15세 이용가로 심의된 게임이 갑자기 등급상향판정을 받은 사유를 알기 위해 해당 권고결정 과정에 관해 기록한 문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게임물 관리 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에 따르면 제 34조 등급분류 결정통보에 "① 위원회는 이용등급을 결정한 게임물에 대해 별지 제10호의 등급분류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 통보 시 해당 신청자에게 결정근거와 결정사유 및 게임물 내용정보가 명시된 별지 제11호의 등급분류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기사를 보면 소녀전선같은 게임사는 공고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http://www.newscap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601 블루 아카이브 외 등급상향이 된 다른게임들과 관련된 모든 회의록을 공개할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앞으로 더욱 신의에 부합하는 행정업무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매크로 답변이 오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가지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가치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왜 답변하기 어려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신.민원 신청에 민간 법조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첨부 파일

피민원인명 게임물관리위원회

피민원인 근무처명 게임물관리위원회

피민원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피민원인 연락처 051-720-6800

답변일

2022-10-26 09:54:17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처리에 관한 문제 제기 및 등급상향결정과 관련된 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로 이해됩니다.
3. ‘블루 아카이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게임산업법 제16조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등급상향 결정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4. 해당 게임물은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았을 때 게임위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 직권등급재분류 조치대상임을 통지하였으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측에서 게임위가 통지한 이용 등급에 대해 수용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5. ‘앙상블스타즈!!’ 게임물은 현재 위원회에서 모니터링 진행 중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게임물이 이용자에게 적절한 등급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등급상향결정과 관련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우리 부에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직접 제공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필요하신 경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게임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7.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5)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제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내용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궁한 안녕을 기원합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준없는 연령등급 조정 통보논란을 시작으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HYPERGRYPH社 명일방주, SUNBORN Network Technology社 소녀전선

넥슨게임즈社 "블루아카이브" 등

일부 게임들과 이를 유통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은 게임물관리 위원회로부터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연령등급이 변경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게임사의 연락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로





이와 관련한 자료로

기사링크(<http://www.newscap.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601>)

[첨부파일1] - 명일방주 관련 자료(위 기사링크와 동일)

[첨부파일2] - 소년전선 관련 자료

[첨부파일3] - 자체등급분류사업에 해당하는 원스토어의 입장관련 자료

이런 행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직권재분류 등)에 따르면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③④를 모두 위반한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합당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과 사후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정한 민원답변을 기원하며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04c0ea3cbb2b2b3a4ea79bba16facd733763b0e69bd46e0257a50d34c6541176.png 

1ef1ed81beea5b0ba1428ba2e1375b9b9fb05acc0fb2abe224c062cccb004120.png 





답변일

2022-11-03 15:36:05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심의 규정에 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3.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등급상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게임물은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4.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6조 제7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을 두고 있고, 이외 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7조의2 및 위원회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등급분류 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4.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6조 제7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을 두고 있고, 이외 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7조의2 및 위원회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등급분류 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5. 등급심의 규정과 관련하여, 건의해 주신 내용들을 검토하여 명확하지 않은 용어 등에 대해서는 향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정 개정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5)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완료상세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관련 민원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내용은 최근 2022년 9월 27일에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을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출판 및 만화를"을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로 한다.

해당 개정안으로 인하여 게임 또한 문화예술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1을 확인하시면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종 1항에서 '예술'은 '특정한 형식의 표현'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해당하는 창작물에 해당됩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의 법률개정 및 시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 및 창작의 자유를 무시하고있습니다.

아래는 헌법 제 2장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은 초법적인 기관이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까지 무시할 수 있습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예술인권리보장법 및 문화탄압으로 규탄하며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점검 및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 및 처벌에 관하여 어떻게 진행할지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상적인 민원처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2-11-24 18:42:5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심의 적정성에 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3.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등급상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게임물은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위원회회의를 통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4.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6조 제7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을 두고 있고, 이외 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7조의2 및 위원회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등급분류 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5.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등급분류 게임물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이용자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게임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에는 ①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②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③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④ 민원 서비스 개선 등으로 신뢰성 회복과 조직쇄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설립취지에 맞게 역할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부는 지원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정보공개 요청이 필요하신 자료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사이트를 통해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7.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5)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3-02-24 18:42:55



제목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관련 민원

내용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내용은 최근 2022년 9월 27일에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을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출판 및 만화"를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한다.

해당 개정안으로 인하여 게임 또한 문화예술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1을 확인하시면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종 1항에서 '예술'은 '특정한 형식의 표현'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해당하는 창작물에 해당됩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의 법률개정 및 시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 및 창작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헌법 제 2장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은 초법적인 기관이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까지 무시할 수 있습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예술인권리보장법 및 문화탄압으로 규탄하며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점검 및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 및 처벌에 관하여 어떻게 진행할지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상적인 민원처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첨부1.png 

답변일 2022-11-24 18:42:5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을 심의 적정성에 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3.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등급상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게임물은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4.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6조 제7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을 두고 있고, 이외 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7조의2 및 위원회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등급분류 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5.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등급분류 게임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이용자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게임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에는 ①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②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③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④ 민원 서비스 개선 등으로 신뢰성 회복과 조직쇄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설립취지에 맞게 역할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부는 지원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정보공개 요청이 필요하신 자료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사이트를 통해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7.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redacted]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3-02-24 18:42:55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회의록 작성지침 및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관련 민원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기원합니다.

아래 내용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
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의 내용으로 미뤄보았을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8조 및 아래 게임산업법 17조에 의거하여 회의록을
작성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17조의3(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
한다.

첨부1은 귀 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입니다.

민원인은 해당 회의록이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는 커녕, 정상적인 회의록으로 보기에조차 심히 부족한, 회의록은 커녕 결과보고서로조차 보이지 않는 조잡한 서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첨부2는 국가기록원에서 발행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서입니다.

첨부2의 90, 91페이지를 보시면 회의록에 들어가야하는 내용, 회의록 양식의 예가 첨부되어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기관의 공문서가 얼마나 성의없게 작성되고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해당 산하기관의 무성의한 공공기록 작성을 규탄하며 해당 지침서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및 기존 작성된 회의록에 대하여 녹취록과 대조하여 재작성을 상위기관에서 시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2022-11-29 15:04:1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회의록 작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됩니다.
3. 게임위는 최근 전면적인 기관쇄신 방안인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방안에는 게임이용자 간담회 개최 등 게임이용자와 소통채널 구축, 회의록 전부 공개 등 등급분류 과정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확대 개편 등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서비스 개선 등 세부 실천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특히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하여,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위해 회의록 공개방식, 시기, 절차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5. 우리 부는 게임위의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 내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등급분류 과정의 전문성,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044-203-2445)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3-02-28 15:04:19

첨부 파일



만족도 평가하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게임콘텐츠산업과의 업무소개 내용입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게임산업 분야의 창작·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게임물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게임산업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와 유통·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게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디지털·모바일·스마트 문화콘텐츠산업 및 에듀테인먼트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해당 업무 중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와 유통의 업무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업무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어 민원드립니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다수의 모바일 게임에 대해 갑작스러운 등급재분류를 진행하여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있습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콘텐츠산업과도 위의 내용과 같이 공정한 등급분류의 업무를 진행하여야하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자행하고있는 담당자 외의 모든 부분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답변중인 소극행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인은 게임콘텐츠산업과의 전화민원 중, 본 과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민원답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으며,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게임콘텐츠산업과의 업무에 공정한 등급분류, 유통의 업무가 있는 이상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민원처리이니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은 궤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완전히 무시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불성실한 민원 답변을 계속할 예정입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의 소극행정 및 업무방치를 비판하며, 해당 건에 대하여 행정조치 및 차후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합니다.



답변일

2022-11-30 17:40:1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민원처리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됩니다.
3. 최근 다수 민원이 발생하여 접수 및 처리 중이며 향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폭증에 따라 업무처리 과정 중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4.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민원대응에서 부처의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부는 위원회가 설립취지에 맞게 역할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등급분류 게임물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이용자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게임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에는 ①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②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③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④ 민원 서비스 개선 등으로 신뢰성 회복과 조직쇄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044-203-2445)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3-02-28 17:40:11

첨부 파일